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2015년 10월 현재, 서울시에
약 3,00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서울시에
67개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서울시에
40개의 광역단위 지원사업 외에도
25개 자치구별 지원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사업
주체발굴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위키서울(WIKI SEOUL)' 사회적경제 조직 인증 지원 및 설립 상담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모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역량 강화	컨설팅(전문컨설팅, 기초컨설팅, 멘토링 및 일상경영지원) 회계/IT지원 경영자문단, 프로보노 운영 경영기초교육(인사·조직관리, 세무회계, SNS·바이럴 마케팅 등)
시장조성지원	공공구매 지원 콜센터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 유통마케팅 지원(사회적경제 장터, 함께누리 쇼핑물, 장터 기자재 대여)
협동화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공간지원(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공동작업장 운영) 국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성장 지원	규모화 전략업종 규모화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 및 운영지원 소셜프랜차이즈 확산
재정지원	서울시 혁신형 사업(상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 마을기업 선정 지원(상·하반기)
금융지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외 정책자금 지원, 소액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
연구·홍보	자율연구 공모, 기획연구 홍보지원(사례발굴, 온라인 플랫폼, 캠페인, 홍보물 등) 협동허브 운영(공동사무실, 교육·행사장, 사회적경제 제품전시, 판매장 등)

※ 세부 사업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포털(www.sehub.net)" 참조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업체

-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23길 25, 상가동 302호
W. http://www.seouljahwal.or.kr
T. 02.793.2579
E. seoul-jahwal@hanmail.net
- 서울사회적기업협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W. http://sewith.or.kr
T. 070.4367.6356
E. seoulcse@gmail.com
-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2호
W. http://cafe.naver.com/maeulse
T. 02.352.5846
E. maeulse@hanmail.net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W. http://cafe.daum.net/seoulcoopconference
T. 02.351.3168
E. seoulcoop@hotmail.com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찾아오는 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 지하철**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서
홍제 방면으로 도보 3분
- 버스**
불광역, 불광1동주민센터 하차
간선 471, 701, 703, 704, 705, 706, 720
지선 7022, 7211, 7212, 7720
마을버스 은평02, 은평04, 은평07 외



서울특별시
I·SEOUL·U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
-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 민주적 참여
-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구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격부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	기업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수요 부응
관련법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육성지침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광역 중간지원 기관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비고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5인일 경우 100%)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일반협동조합(신고제)과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의 종류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요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1인 창업의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 창업으로 관리)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른다

지원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조건 충족
- 자활기업 근로일수의 조건이행 기준 충족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H 이상) 또는 평균 4일 이상(22H 이상)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지원내용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 한시적 인건비 지원 (수급자 최대 5년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 자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6개월 / 전문가 최대 3년)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최대 5천만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상담 및 문의처 서울광역자활센터 02.318.4140 www.sjahwal.or.kr

사회적기업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의 종류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빈곤, 소외, 범죄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 제공
- 혼합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기타형** 취약계층 고용비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용 등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자격부여	고용노동부	서울시 / 관련부처
인증/지정 요건	1. 조직형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작동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없음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수입 > 노무비 * 50%)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신청	연중접수(격월을 원칙으로 실시)	연중 1~2차 일정공고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3년

지원내용

지원제도 및 내용	전문인력 채용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시설 및 운영비 대부	모태펀드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 기업	○	○	○	○	○	○	○	○	○
예비 사회적 기업	△	○	○	△	-	△	△	○	-

상담 및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02.365.0330 www.joyfulunion.or.kr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의 욕구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기업의 유형

지역특산물-자연자원 활용	지역관광, 전통공예, 특화브랜드 개발, 커뮤니티 마케팅 등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수익사업 모형 개발, 상권 복원 등
공공부문 위탁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
쓰레기/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음식쓰레기, 폐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 등
녹색에너지 실천	자연생태관광, 자연에너지 활성화 등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지역 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가치 기술 활용 등
유통형 마을기업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판로확보(광역 1개소)
新유형 마을기업	일반 마을기업과 차별화를 두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참신한 유형의 마을기업

지정요건

- 기업성**
 -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형태
 - 시장경쟁력 있는 사업을 통해 수익창출, 손실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기준 충족
-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 실천
 - 모든 회원은 출자자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업 운영에 참여
 -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마을기업에 출자(10인 이상 출자 권장)
-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지역사회공헌활동 필수 이행)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은 50% 미만
 - 현행법을 준수,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활동 금지
 -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 수립
- 지역성**
 -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사업 수행
 - 출자자,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단, 출자자 5인일 경우 출자자 모두는 주민)

설립 전 교육(입문/기본/심화_24H), 전문과정(2년차 신청 기업, 우수마을기업_4H) 필수 이수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 2년 총 8천만원 한도 사업비 지원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 인센티브: 행정자치부 선정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 자립 및 성장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박람회 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홍보·마케팅 등

상담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353.3553 www.sehub.net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정의]

협동조합의 종류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충족	사회목적 실현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유형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반드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금융·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배당	손실금 보전 및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적립 이후 잉여금에 대한 배당가능(이용배당_전체배당액의 50% 이상/출자배당_총출자금의 10% 미만)	배당불가
청산	채무를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부채 및 출자금을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중 하나에 귀속

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사업자가 주인이 되어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영위 (소셜프렌차이즈, 공동판매장, 공동브랜드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동물병원, 사회서비스, 언론 등)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외식업, IT개발자, 운송업 등)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공동육아, 주택, 와인구매 등)

지원내용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단계별 밀착지원 및 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치확산 및 홍보 등
- 전략분야 성공모델 발굴: 공공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전략 분야 선정 및 모델 활성화 지원
- 생태계 조성: 서울시 협동기금 조성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연합회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조례 제정 및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

상담 및 문의처 (일반협동조합)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1544.5077 www.15445077.net (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02.365.0330 www.joyfulunion.co.kr